

의안번호	2218074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6. 7. 9.
추계번호	26D191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반려동물 등의 구조, 대피 및 임시보호 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4억 7,400만원~87억 8,000만원, 2032년 1억 8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0억 500만원~272억 2,900만원(연평균 28억 1,000만원~54억 4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(시나리오1) 임시보호 대상 가구수를 반려동물 양육 이주민 가구의 5%로 가정							
동물 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 (안 제34조의10제1호 신설)	4,474	4,563	4,655	177	181	14,050	2,810
(시나리오2) 임시보호 대상 가구수를 반려동물 양육 이주민 가구의 10%로 가정							
동물 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 (안 제34조의10제1호 신설)	8,780	8,956	9,135	177	181	27,229	5,446

- 주: 1.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(안 제34조의10제1호 신설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에서는 동물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의 대상을 반려동물(반려견, 반려묘)로 한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이주민 가구 중 반려견 및 반려묘를 동반하는 가구에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1개씩 지급하고, 해당 가구 중 대피소 등의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 임시주거시설(이동식 가설건축물로 가정)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가정
 3. 최근 10년(2015~2024년) 연평균 이주민 가구 수에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가구 비율을 각각 18.1%, 6.8%를 적용하고 가구 당 반려견 수는 1.2마리, 반려묘는 1.5마리를 곱하여 구호대상 반려동물 수를 산출하여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1개씩 제공
 4.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이주민 가구 수는 연간 1,835가구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대피소 등의 이용이 어려운 가구의 비율에 대하여 시나리오(5%, 10%)를 적용하여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 제공이 필요한 수량을 가정
 5. 반려견 및 반려묘 생존키트 1개당 비용은 2023년 기준 각각 85,000원, 75,000원, 임시주거시설 1동당 비용은 2025년 기준 4,4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10제1항 (동물 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) 신설	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, 가축 등 동물의 구조,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호: 동물의 구조·대피·임시보호 계획 제2호: 동물 구호에 관한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제3호: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제4호: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4조의10제1항 (동물 구호체계의 구축·운영) 신설	0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동물 구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동물의 구조·대피·임시보호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

- 개정안에서 규정한 동물 구호에 관한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,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거나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
 - 소방청은 2022년에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
 - 또한 중앙소방학교는 2024년에 동물구조분야 현장대응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, 대한수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- 한편, 동물 구조·대피·임시보호계획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이재민 가구에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1개씩 지급하고, 해당 가구 중 대피소 등의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가정
 - 이재민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을 반려견과 반려묘로 한정하고,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은 가설건축물로 가정
- 2026년 현재 반려동물을 구호대상에 포함하여 생존키트 등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가정
 -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2020년부터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하여 호남권 재해 구호시 지급하고 있으나 수량이 미미하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함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또는 대피소로 체육관, 학교, 마을회관, 경로당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숙박시설과 제휴하여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소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한 사례는 없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3%	2.1%	2.3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이재민 가구 중 반려견 및 반려묘를 동반하는 가구에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1개씩 지급하고, 해당 가구 중 대피소 등의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

가. 반려동물 생존키트 지급

- (수량)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 구호를 위하여 매년 1,249개의 반려견 생존키트와 586개의 반려묘 키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
 - 이재민 가구 중 반려견 또는 반려묘 양육가구 당 지급하는 생존키트 수량은 반려견용 1,249개(=5,750가구×18.1%×1.2마리), 반려묘용 586개(=5,750가구×6.8%×1.5마리)로 추정되고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행정안전부의 「재해연보」에 따르면, 최근 10년(2015~2024년) 연평균 이재민 수는 12,649명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.2명²⁾으로 나누면 연평균 이재민 가구 수는 5,750가구로 추정
 - 전체 가구 중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가구 비율은 각각 18.1%, 6.8%로 추정되고 반려견 가구당 평균 1.2마리, 반려묘 가구당 평균 1.5마리 양육³⁾
- (1개당 비용) 반려동물 생존키트 1개당 비용은 전주시의 사례⁴⁾를 참고하여 2023년 기준 반려견용 85,000원, 반려묘용 75,000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이재민 가구 중 반려견 및 반려묘를 동반하는 가구에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1개씩 지급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6,700만원, 2032년 1억 8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억 6,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2) 지표누리(www.index.go.kr)의 가구원수 자료

3) KB경영연구소 「2023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」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반려견 가구는 394만 가구, 반려묘 가구는 149만 가구이므로 2021년 말 기준 전체 가구 수 2,177만 4,000가구 수 대비 비율은 각각 18.1%, 6.8%이고 반려견 가구당 평균 1.2마리, 반려묘 가구당 평균 1.5마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4)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2020년부터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하여 호남권 재해 구호시 활용되고 있음

[표 2] 반려동물 생존키트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반려견 생존키트 수량(A, 개)	1,249	1,249	1,249	1,249	1,249	—
반려견 생존키트 1개당 비용(B, 원)	94,475	96,364	98,291	100,257	102,262	—
반려묘 생존키트 수량(C, 개)	586	586	586	586	586	—
반려묘 생존키트 1개당 비용(D, 원)	83,360	85,027	86,728	88,462	90,231	—
추가재정소요(=A×B+C×D, 백만원)	167	170	174	177	181	86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 제공

□ (수량)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 구호를 위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3년 주기로 92~184동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
- 본 추계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사례는 2017년 포항 지진, 2019년 고성 산불에 준하는 상황⁵⁾으로 보아 추계기간 동안 3년 주기로 임시건축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기간 최초 3년(2028~2030년) 동안에는 매년 임시주거시설을 신규로 제공하고 4년차인 2031년에는 2028년 이재민이 사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재사용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-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이재민 가구는 매년 1,835가구⁶⁾로 추정되고 본 추계에서는 대피소 등의 이용이 어려운 가구의 비율에 대하여 시나리오(5%, 10%) 적용하여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 제공이 필요한 수량을 가정
 - 시나리오1(반려동물 양육 이재민 가구의 5%): 92동
 - 시나리오2(반려동물 양육 이재민 가구의 10%): 184동

5)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일정기간 대피시설을 이용한 후 복귀하지만, 2017년 포항 지진 이재민들은 3년 이상 체육관에서 생활하거나 2019년 고성 산불 시 전소된 집의 복구기간이 길어져 임시주거시설에 약 2년 동안 생활한 사례가 있음

6) 이재민 가구 수(5,750가구)에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가구 비율(18.1%+6.8%)을 적용하면 재난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1,835가구로 추정

□ (1동당 비용)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의 1동당 비용은 2028년 4,505만원, 2032년 4,900만원으로 추정

-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, 2025년 기준 가설건축물의 1동당 비용은 4,400만원⁷⁾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

□ 추계결과,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3억 700만원~86억 1,300만원, 2030년 44억 8,100만원~89억 6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1억 8,100만원~263억 6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구분	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수량(A, 동)	시나리오1	92	92	92	-	-	-
	시나리오2	184	184	184	-	-	-
1동당 비용(B, 만원)		4,681	4,775	4,870	-	-	-
추가재정소요 (=A×B 백만원)	시나리오1	4,307	4,393	4,481	-	-	13,181
	시나리오2	8,613	8,786	8,961	-	-	26,3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7) 경상북도 영양군이 발주한 계약(‘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구입 설치’)으로 10개를 구입 및 설치하는 데 기초금액이 4억 4,000만원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반려동물 등의 구조, 대피 및 임시보호 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4억 7,400만원~87억 8,000만원, 2032년 1억 8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0억 500만원~272억 2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(시나리오1) 임시보호 대상 가구수를 반려동물 양육 이주민 가구의 5%로 가정						
반려동물키트 지급(A)	167	170	174	177	181	869
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(B)	4,307	4,393	4,481	—	—	13,181
추가재정소요(=A+B)	4,474	4,563	4,655	177	181	14,050
(시나리오2) 임시보호 대상 가구수를 반려동물 양육 이주민 가구의 10%로 가정						
반려동물키트 지급(A)	167	170	174	177	181	869
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(C)	8,613	8,786	8,961	—	—	26,360
추가재정소요(=A+C)	8,780	8,956	9,135	177	181	27,229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동물 구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동물의 구조·대피·임시보호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,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이재민 가구에 반려동물 생존키트 지급, 해당 가구 중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을 시나리오(5%, 10%)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